

< 변경 대비 표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1호(국공채)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21.12.28

3. 주요 변경 사항 :

-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자산의 문구 추가 수정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형상 -> 김은영)

4. 변경사항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 9. (생략) <p>②(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u>사채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한하며,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u>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 9. (현행과 같음) <p>②(현행과 같음)</p>
부칙	<u><신설></u>	<u>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u>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u>안형상</u>	<u>김은영</u>
효력발생일	-	<u>2021년 12월 28일</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자산의 문구</u>

		<u>추가 수정</u> <u>-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형상 -> 김은영)</u>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u>안형상</u>	<u>김은영</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합니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합니다) · <u>사채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한하며,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u> .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 운용자산규모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u>안형상</u>	<u>김은영</u>
효력발생일	-	<u>2021년 12월 28일</u>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키움 프런티어 신종 법인용 MMF 제2호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21.12.28.
3. 주요 변경 사항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형상 -> 김은영)
4. 변경사항

[집합투자규약]

: 변경사항 없음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안형상	김은영
효력발생일	-	2021년 12월 28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형상 -> 김은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안형상	김은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운용자산규모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안형상	김은영
효력발생일	-	2021년 12월 28일

< 변경 대비 표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21.12.28

3. 주요 변경 사항 :

- 집합투자규약 투자대상자산의 문구 수정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형상 -> 김은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4. 변경사항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4.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p> <p>5.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6. ~ 9. (생략)</p> <p>②(생략)</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4.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p> <p>5.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u>사채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한하며,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u>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6. ~ 9.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부칙	<신설>	<u>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u>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안형상	김은영
효력발생일	-	2021년 12월 28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집합투자계약 투자대상자산의 문구 수정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형상 -> 김은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안형상	김은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합니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합니다)· 사채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한하며,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0.05% 로 6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0.07% 로 6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운용자산규모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	-------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운용전문인력	안형상	김은영
효력발생일	-	2021년 12월 28일